

창원시 진해 남문지구 리젠시빌란트 더월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요청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건물주별 방문예약제 운영 안내
 - '진해남문 리젠시빌란트 더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물주별 관리를 방문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 기간 사전서체 제출 및 자격검정 방문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 1. 건물주별 방문예약제
 - 건물주별 관리 및 사전서체 제출은 '진해남문 리젠시빌란트 더월' 홈페이지(http://nm2-rant.co.kr)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방문예약 접수 방식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건물주별 입장이 가능합니다.
 - 2. 건물주별 방문예약제 사전예약자 및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내방시 1인 방문이 원칙이나 사전예약 신청서 등 방문 신청자에 한해 동행 입장 가능합니다.(최대 2인 입장 가능 / 대리인 위임시 포함)
- 건물주별 방문 시 사전예약자 및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내방시 1인 방문이 원칙이나 사전예약 신청서 등 방문 신청자에 한해 동행 입장 가능합니다.(최대 2인 입장 가능 / 대리인 위임시 포함)
- 건물주별 방문 시 사전예약자 및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내방시 1인 방문이 원칙이나 사전예약 신청서 등 방문 신청자에 한해 동행 입장 가능합니다.(최대 2인 입장 가능 / 대리인 위임시 포함)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시해경경제자유구역권 건축과 - 3513호(2021.03.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일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275-1번지(진해 남문지구 A5-1블록)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5층, 5개동 총 458세대 [특별공급 307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45세대, 경제자유구역 45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45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91세대, 노부모양육특별공급 13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68세대 포함) 및 부대부차설] ■ 입주시기: 2024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사전에 통보 예정임)
- 공급대상 (단위: m²/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 면적기준)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급면적 (이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약식 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스게	기관 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148		01	074.3988A	74A	74.3988	26.0244	100.4232	38.4048	138.8280	44.4318	120	12	12	24	3	17	80	40	2
			02	074.9190B	74B	74.9190	26.4746	101.3936	38.6734	140.0670	44.7425	24	2	2	5	1	4	16	8	1
			03	084.8631	84	84.8631	28.0543	112.9174	43.8064	156.7238	50.6812	314	31	31	31	62	9	47	211	103
					합계						458	45	45	45	91	13	68	307	151	1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세제, m)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2차 계약후 7개월	2021.09.10	2022.02.10	2022.07.10	2022.12.10	2023.04.10	2023.09.10	입주시				
74A	120	1층	2	53,048,000	198,052,000	251,100,000	10,000,000	15,110,000	25,110,000	25,110,000	25,110,000	25,110,000	25,110,000	25,110,000	25,110,000	75,330,000			
			2	53,048,000	203,552,000	256,600,000	10,000,000	15,660,000	25,660,000	25,660,000	25,660,000	25,660,000	25,660,000	25,660,000	25,660,000	76,980,000			
			3	53,048,000	214,752,000	267,800,000	10,000,000	16,780,000	26,780,000	26,780,000	26,780,000	26,780,000	26,780,000	26,780,000	26,780,000	80,340,000			
			4	53,048,000	220,352,000	273,400,000	10,000,000	17,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82,020,000			
			5	53,048,000	225,852,000	279,900,000	10,000,000	17,890,000	27,890,000	27,890,000	27,890,000	27,890,000	27,890,000	27,890,000	27,890,000	83,620,000			
74B	24	2층	1	53,419,000	205,681,000	259,100,000	10,000,000	15,910,000	25,910,000	25,910,000	25,910,000	25,910,000	25,910,000	25,910,000	77,730,000				
			1	53,419,000	216,981,000	270,400,000	10,000,000	17,040,000	27,040,000	27,040,000	27,040,000	27,040,000	27,040,000	27,040,000	81,120,000				
			1	53,419,000	222,581,000	276,000,000	10,000,000	1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82,800,000				
			1	53,419,000	228,181,000	281,600,000	10,000,000	18,160,000	28,160,000	28,160,000	28,160,000	28,160,000	28,160,000	28,160,000	84,480,000				
			1	53,419,000	233,781,000	287,200,000	10,000,000	18,720,000	28,720,000	28,720,000	28,720,000	28,720,000	28,720,000	28,720,000	86,100,000				
84	314	1층	12	60,510,000	221,790,000	282,300,000	10,000,000	18,230,000	28,230,000	28,230,000	28,230,000	28,230,000	28,230,000	28,230,000	84,690,000				
			14	60,510,000	227,990,000	288,500,000	10,000,000	18,850,000	28,850,000	28,850,000	28,850,000	28,850,000	28,850,000	28,850,000	86,530,000				
			2	60,510,000	240,590,000	301,100,000	10,000,000	20,110,000	30,110,000	30,110,000	30,110,000	30,110,000	30,110,000	30,110,000	90,530,000				
			4	60,510,000	246,890,000	307,400,000	10,000,000	20,740,000	30,740,000	30,740,000	30,740,000	30,740,000	30,740,000	30,740,000	92,220,000				
			6	60,510,000	253,090,000	313,600,000	10,000,000	21,360,000	31,360,000	31,360,000	31,360,000	31,360,000	31,360,000	31,360,000	94,080,000				

- 본 아파트의 공급금액은 주택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실관계가 적용되며, 분양사실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총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사비내용은 사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대지비의 감소 등 인허가상 변경에 대한 가감내역에 현금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 평균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평면)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평면)으로 기재하며,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방법 단면적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II 공급신청자격

구분	내용
1회 청약/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취소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1세대 1인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양육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신청 시 되면 당첨자는 부부합산신청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가 신청일 기한을 제정받을 수 있으며 동일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부합산신청자 관련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공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양육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할미 및 도사재생 부가제거자는 제외),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양육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사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함)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은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신청 자격요건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5.)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인양, 형제자매양육) 중 입주자모집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외에서 거주하는 재외포교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경상남도 창원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해당 청약신청가능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도 경상남도 창원시 거주자로 인정함)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청약 전 반드시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과거당첨 사실 조회 요망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예금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부합산신청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공급지역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공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II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사항

구분	가주 구분	순위	신청 구분	신청자격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면적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예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예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예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 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예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예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예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중 상시 1순위 자격 미달자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양육,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1.04.05 (월)	2021.04.06 (화)	2021.04.07 (수)	2021.04.14 (수)	2021.04.26 (월)~2021.04.28 (수)
방법	인터넷청약(08:00~17:30)	인터넷청약(08:00~17:30)	인터넷청약(08:00~17:30)	개별조회(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건본주택 방문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별 건물주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당사 건물주별	

- ※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물주별 방문 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주소는 신청 당일 청약자격 미달 이력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입주자 저축 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신청대상자	서울 및 광역시 외 지역(경상남도 창원시 및 경상남도)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خص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접수(계약체결 전 서류상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특대급 임대주택	일반(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양육,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04.14(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급인증서 및 네이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04.16(금)~2021.04.20(화) (10:00~16:00) · 장소: 진해남문 리젠시빌란트 더월 건물주별 (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2-2) - 특별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 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제출 - 1,2순위 당첨자: 계약체결 서류제출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서류제출(서류제출 기간 중 별도 일정 통보) ※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접수기간 및 유효행 접수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일에는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일제나 참모집사가 바랍니다. · 서류접수 접수시간의 과밀로 인한 접수일정 및 운영 시간이 상이하오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04.26(월)~2021.04.28(수) (10:00~16:00) · 장소 - 진해남문 리젠시빌란트 더월 건물주별 (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2-2)

- 건물주별 입장 전 마스크 및 비닐장갑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건물주별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방역장치가 불충분할 경우 - 감염증 확산방지 및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 연락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물주별 관리,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방문예약제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어려운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시, 적외선 센서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급인증서 및 네이비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물주별(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인력(주택형, 주택형, 생애월일 입력)조사가 가능하나 정보 오인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급인증서 및 네이비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급인증서 및 네이비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인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사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된(확인)반드시 공급인증서 및 네이비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직접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감사소요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감사결과 공급지역 또는 선정순위에 정적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및 면적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직접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이후에도 전산감사결과 면적 결정으로 판명되어 부적격사항기간 내 부적격자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구비사항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포함)	○	계약관(무통장입금증)		- 분양계약료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귀국가서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택공급 신청서		-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주민등록표등본		- 서명, 주민등록번호(세대대표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특별공급	○	출입국사실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주소변경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	가속계약증서		- 해당 특별공급 관련서류 지참 * 당첨자 접수일 제출 시 구비서류 생략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직계존·비속 주민등록표초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 통보자	○	혼		